

충청북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1994년 3월 16일
- 회부일자 : 1993년 3월 16일

3. 개정이유

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(대통령령 제 14,093호, '93. 12. 31)에 따라 동 조례의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의 기능중 설계등의 심의 대상 공사금액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코자 함.

4. 주요골자

-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설계심의 대상금액 1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공사를
→ 30억원이상 200억원 미만공사로 개정

5. 검토의견

대통령령 제 14,093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중 개정령에 의거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회의 설계심의 대상 금액을 적정수준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6. 개정조례안 및 참고자료 : 별 첨